

<붙임>

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지침
(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포함)
(Investment Policy Statement)

2017. 2.



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
한국주택금융공사

목 차

제1장 총 칙

1. 개요 -----	1
2.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체계 -----	2
3.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-----	3
4. 자산운용체계 -----	4

제2장 자산운용정책

1. 자금운용계획 -----	8
2. 유동성분석 및 적정 단기자산규모 추정 -----	9
3.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-----	10
4. 자산배분 -----	12
5. 자산운용기준 -----	15
6.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-----	17

제3장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

1. 위험관리 -----	20
2. 성과평가 -----	24

제4장 선관주의 원칙

1. 감사 및 공시 -----	26
2.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-----	26

제1장 총 칙

1. 개요

1.1. 자산운용지침의 개요

- 가. 이 지침은 『한국주택금융공사법』(이하 “공사법”) 제58조(기금의 관리·운용), 제59조의5(기금규정의 준용), 『국가재정법』 제63조(기금자산운용의 원칙) 및 동법 제79조(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)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(이하 “기금”)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(이하 “계정”)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나. 이 지침은 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(이하 ‘공사’라 한다)가 작성하고,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의결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, 내용은 1년 단위로 재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. 이 지침은 공사, 외부 운용사 등 기금 및 계정의 자산과 관련된 모든 조직과 사람에게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.
- 라. 이 지침에서 “자산”이라 함은 기금의 설립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현금,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말한다.

1.2. 자산운용지침의 목적

- 가. 이 지침은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기금 및 계정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 자산운용의 정책, 운용 목표 및 운용지침을 제시한다.
- 나. 이 지침은 기금 및 계정의 자산운용의 위험관리,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한다.
- 다. 이 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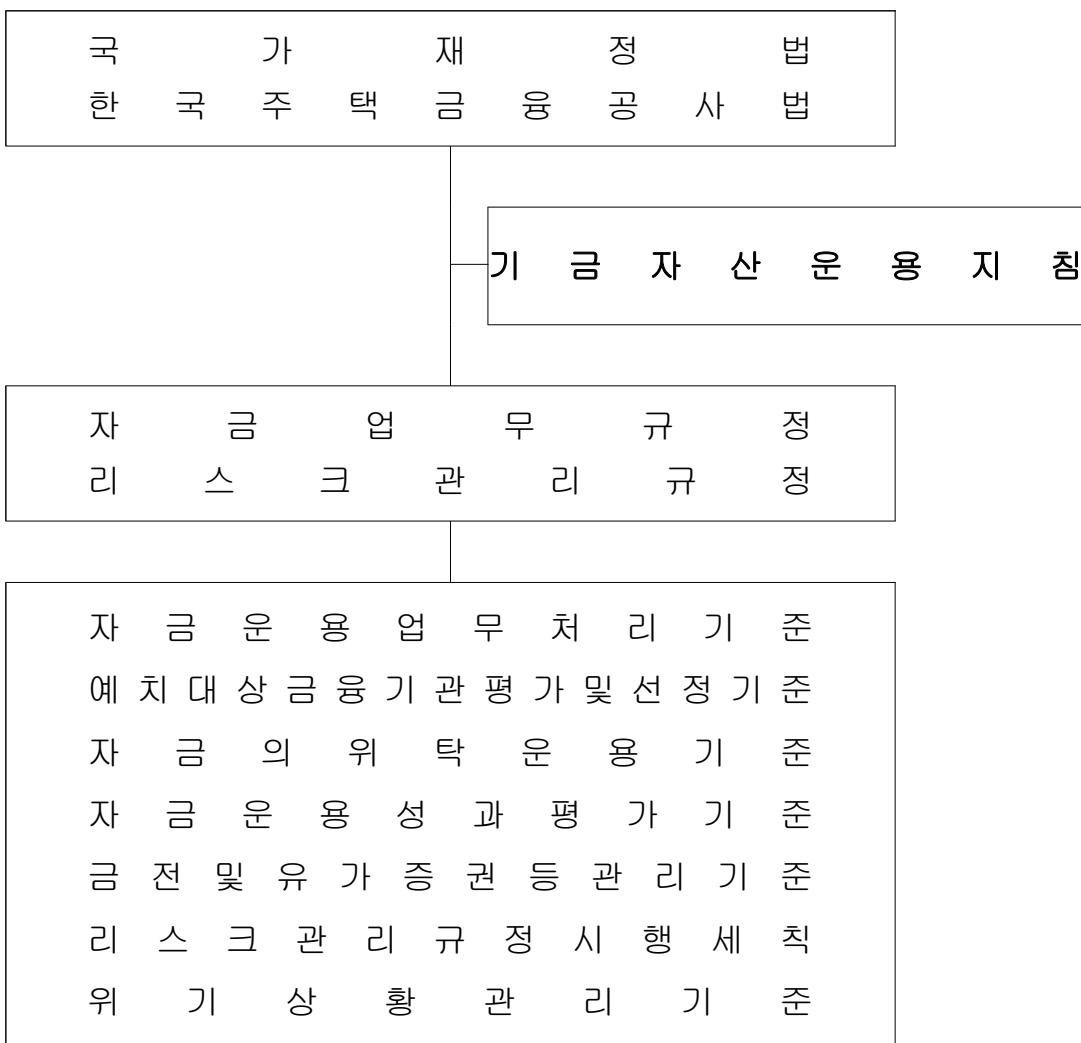
1.3. 기금 및 계정의 개요

- 가. 기금은 1987년에 제정된 『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』(2003.12.31 폐지)(이하 『주거안정법』)에 의거하여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설치된 이후
- 나. 『공사법』의 제정으로(2003.12.31) 공사 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(동법 제55조)을 설치하여 동법 부칙 제6조(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경과 조치) 제①항에 의거 기존 『주거안정법』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포괄 승계하였으며
- 다. 『공사법』의 일부 개정으로(2007.1.11) 기금 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(동법 제59조의2)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업무를 추가하였다.
- 라. 기금 및 계정의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,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 되며, 이 기본재산으로 기금 및 계정의 목적달성을 필요한 용도에 지출한 후 잔여 여유자금은 현금,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에 운용한다.
- 마. 2016년말 기금 및 계정의 총 자산규모는 약 5조 5,370억원이며, 유가증권 3조 1,648억원, 예치금 1조 8,461억원, 공공자금관리기금 5,261억원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다.

2.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체계

기금 및 계정은 『국가재정법』 및 동법 시행령, 『공사법』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,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이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제정한 자금업무규정, 리스크관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.

【 규 정 체 계 】



3.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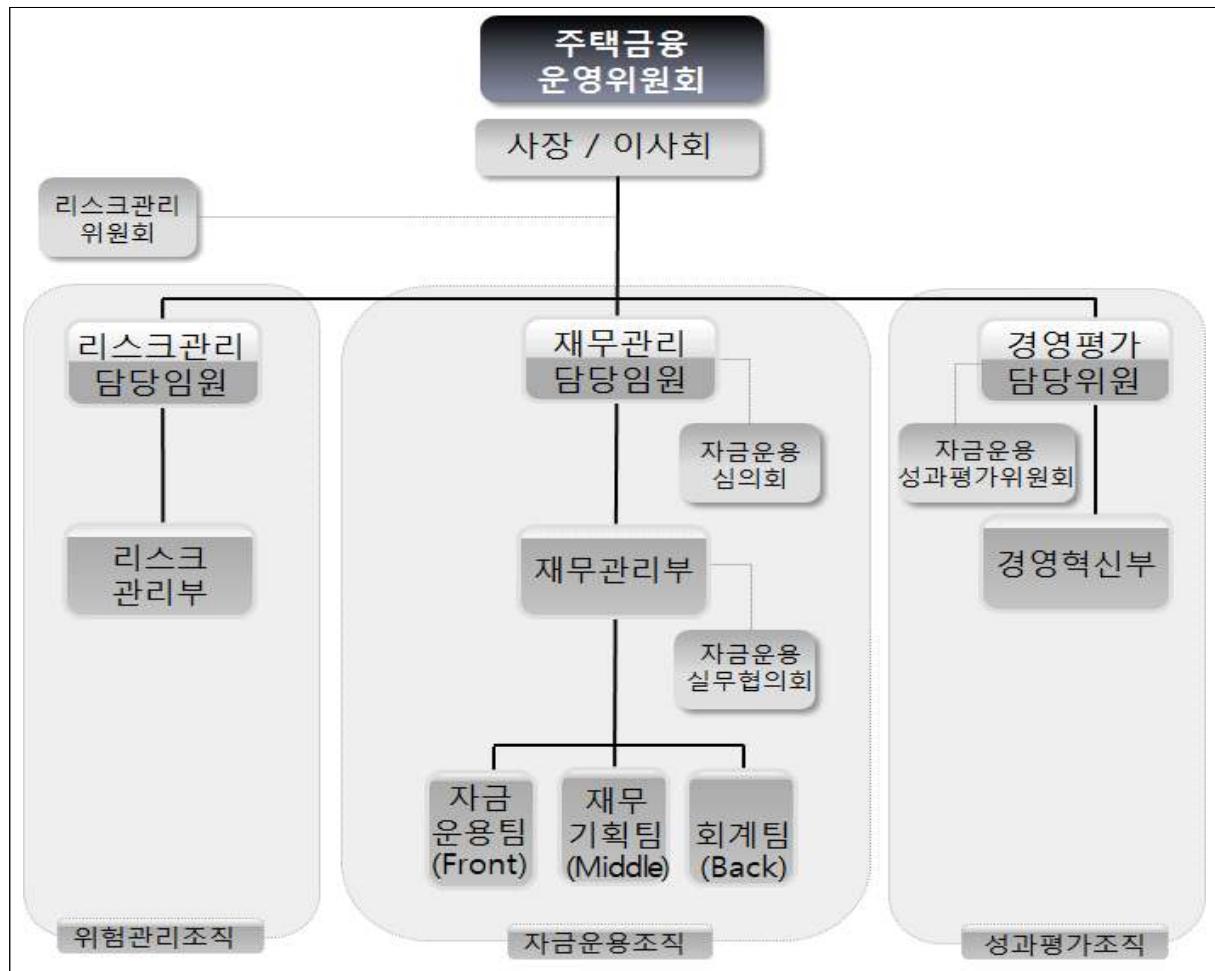
-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와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 및 계정의 안정적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운용한다.
- 기금 및 계정의 자산은 자산운용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정성, 유동성 및 공공성을 우선하여 운영함으로써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되, 수익률을 극대화함으로써 기본재산 확충에 기여하도록 한다.

4. 자산운용체계

4.1. 자산운용체계 및 조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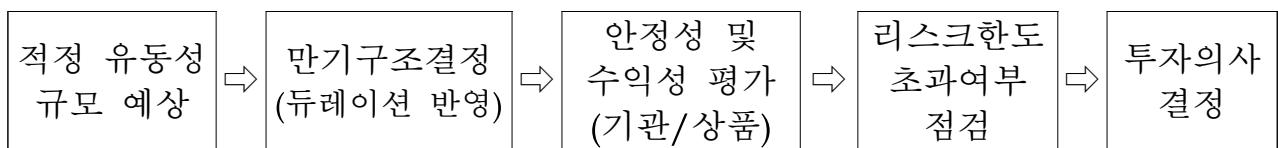
가. 의사결정 구조도

【자산운용체계】



나. 의사결정기준

- 자금운용심의회, 성과평가위원회,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사 결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.
- 금융기관 출연금, 대위변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유동성 규모의 추정을 통해 만기구조를 결정한 후,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다.



4.2. 자산운용 조직과 역할

가. 주택금융운영위원회 (『국가재정법』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해당)

-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 및 계정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, 기금 및 계정의 자산운용지침 제·개정 등 공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·의결한다.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 위원회의 위원은 공사의 사장,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,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1인,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1인씩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으로 이루어지며 공사의 사장이 위원장이 된다.
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나. 이사회

-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부의사항, 자본금 변경 및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이사회는 사장, 부사장,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사장이 의장이 된다.
-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다. 자금운용심의회 (『국가재정법』의 자산운용위원회에 해당)

- 자금계획 수립 등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연간자금계획 및 기금계정(연금계정 포함)의 자산운용지침
 - 금융기관 평가, 외부위탁 운용에 관한 사항
 - 자금운용 성과평가 결과의 피드백 등
- 자금운용심의회는 재무관리 담당임원, 재무관리부장, 리스크관리부장 및 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재무관리 담당 임원이

된다. 다만,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- 자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자금업무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라. 리스크관리위원회

- 기금 및 계정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
 - 리스크성향, 리스크유형별 한도의 설정
 - 리스크관리규정의 개정
-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담당임원, 유동화사업 담당임원, 기금사업 담당임원 및 이사회에서 선임한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한다.
 -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리스크관리 위원회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마. 성과평가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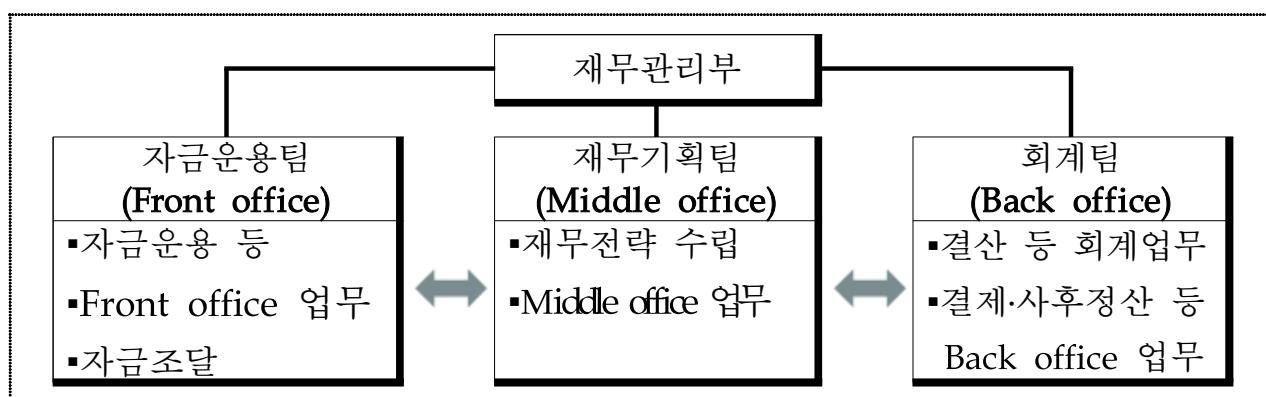
- 자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평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- 성과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 -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자금운용성과 평가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성과평가위원회는 재무관리부로부터 운용수익률, 기준수익률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, 자산운용과 관련된 재무관리부의 수시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.

바. 자금운용실무협의회

- 월간 자금운용계획 및 성과 등 자금운용 실무사항을 협의한다.
- 자금운용실무협의회는 재무관리부장과 재무기획팀장, 자금운용팀장, 주택보증리스크팀장, 성과관리팀장, 보증기획팀장, 신탁자금팀장 등 사업부서 소속 업무팀장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재무관리부장으로 한다.

사. 재무관리부

- 자금계획 수립 및 실행, 자금운용, 자금의 차입 및 상환, 주요 재무지표 관리, 손익관리 및 경영분석, 회계 및 결산업무 실행, 각종 조세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부내 조직을 재무기획팀, 자금운용팀, 회계팀으로 구분·운영함으로써 자산운용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한다.



아. 경영혁신부

- 경영혁신부는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등 자산운용 성과평가를 주관한다.

자. 리스크관리부

- 리스크관리부는 재무리스크 관리를 주관한다.
 - 리스크관리정책 및 지침수립, 리스크인식 및 측정,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차. 감사실

- 감사실은 분기별 운영위험 체크리스트 점검 등 운영리스크 관리업무를 주관한다.

제2장 자산운용정책

1. 자금운용계획

1.1. 자금수지분석

가.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, 신용보증료, 구상채권 회수금 등 자금수입규모와 대위변제금, 기금운영비 및 차입금 상환 등 자금지출규모를 분석하여 연간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고,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 별로 항목별 수입·지출 실적분석을 통하여 정확성을 제고한다.

나. 2017년 자금수입 및 지출계획

(억 원)

구 분	주신보기금		주연보계정	
	실적('16년)	계획('17년)	실적('16년)	계획('17년)
전 기 이 월	48,982	53,475	1,449	1,895
자 금 수 입(A)	10,420	10,856	623	726
출연금(자본금)	6,150	6,233	34	47
정 부	-	-	-	-
금 용 기 관	6,150	6,233	34	47
운 용 수 익	770	1,224	24	32
보 증 료 등	1,332	1,421	540	579
구 상 권 회 수	1,908	1,750	24	65
기 타 수 입	260	228	1	3
자 금 지 출 (B)	5,927	5,420	177	227
대 위 변 제	2,989	3,930	45	61
대 지 급 금 등	194	192	2	2
관 리 업 무 비	316	349	123	149
지 급 수 수 료 등	83	99	-	-
보증료환급	229	278	4	4
정부출연금 반납	2,000	500	-	-
기 타 지 출	116	72	3	11
여 유 자 금 증 감 (A-B)	4,493	5,436	446	499
12 월 말 잔 액	53,475	58,911	1,895	2,394

* '17년 기금운용계획 참고

1.2. 자금의 구분

운용자금은 아래와 같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분류하고, 단기자산은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으로 구분한다.

- 현금성자금 : 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금으로서, 사업비 등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
- 유동성자금 : 만기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금으로서,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금
- 중장기자산 : 만기 1년 이상의 운용자금으로서, 자금운용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운용하는 자금

2. 유동성분석 및 적정 단기자산 규모 추정

가.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유동성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.

【 적정유동성 규모 산출 방법론 】

자금 유출입 특성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자금수지 예측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주택신용보증사업의 특성을 반영, 자금 유출입액 예상
계획 대비 실적오차 보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대위변제 계획 대비 지출 오차 측정• 유동성 위험 통제수준 설정(통제수준 95%)*
적정유동성 산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기간별 적정유동성 추정*

* 유동성 부족 발생가능성을 5% 미만(신뢰수준 95%)으로 통제

나. 단기자산은 당해연도 사업비 지출예상액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유동성 규모를 합산하여 운용규모를 결정하고, 단기자금 설정근기는 연간 자금계획에 명시한다.

다. 현금성자금 및 유동성자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.

- 현금성자금은 과거 사업비 일별 지출 평균과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99% 목표수준으로 향후 2영업일의 소요 자금에 해당되는 규모로 산정한다.

- 유동성자금은 현금성자금을 제외한 단기자산에서 만기도록 자금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- 라. 운용기간별 자금 배분안은 연간자금계획에 운용규모, 허용제한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- 마. 재무관리부는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별로 수입·지출 실적을 분석하여 자금배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, 향후 자금수지 및 금융 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계획과 실적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경우 기간별 자산배분안을 수정할 수 있다.

3.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

3.1. 목표수익률

가. 목표수익률은 “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(Return Objectives)”로서 연간자금 계획 수립시 사전적으로 설정한다.

- 목표수익률 설정 시에는 자산·부채의 현재가치를 고려한 내부요구수익률과 장·단기 대표 투자자산별 기대수익률을 고려한다.
- 목표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되, 그 세부사항은 연간자금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○ 목표수익률 설정방법

구 분	설정방법
단 기	단기자산 평균 드레이션의 대표 금융상품의 예상수익률
중장기	MAX{중장기 경영지표와 연계된 내부요구수익률, 대표 금융상품 및 드레이션을 고려한 예상수익률}
전 체	$\Sigma(\text{기간별 목표수익률} \times \text{기간별 투자비중})$

※ 예상수익률은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자문기관 또는 시스템에서 산출된 값을 근거로 한다.

○ 2017년 목표수익률

구 분	단기	중장기	전체	(%)
주신보기금	1.15	1.76	1.75	
주연보계정	1.15	1.59	1.58	

나. 목표수익률과 운용수익률의 차이 및 동 원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시장환경 및 자금수지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목표수익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3.2. 허용위험한도

가. 시장위험한도는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운영한다.

- 단기자산은 향후 1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‘기준금리’를 초과하지 못할 확률을 1% 이내(Shortfall Risk≤1%)로 통제하도록 한다.
 - 중장기자산은 향후 1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‘0%’를 초과하지 못할 확률이 1% 이내(1년 Shortfall Risk≤1%), 향후 3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‘0%’를 초과하지 못할 확률이 0.5%이내(3년 Shortfall Risk≤0.5%) 및 향후 5년간 ‘물가상승률’을 초과하지 못할 확률이 5%이내(5년 Shortfall Risk)≤5%]를 충족하는 자산배분(안)을 선택한다.
 - 전체자산은 향후 1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‘0%’를 초과하지 못할 확률이 1%이내(1년 Shortfall Risk≤1%), 향후 3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‘0%’를 초과하지 못할 확률이 0.5%이내(3년 Shortfall Risk≤0.5%) 및 향후 5년간 ‘물가상승률’을 초과하지 못할 확률이 5%이내(5년 Shortfall Risk)≤5%]를 충족하는 자산배분(안)을 선택한다.
 - Market VaR한도는 99%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손실규모를 설정한다.
- 나. 신용위험한도는 운용기간 및 운용상품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99.9% 신뢰 구간의 Credit VaR를 사용한다.

< 2017년 주신보기금 신용 및 시장위험 위험자본한도 배분(안) >

(억원)

구 분	예치금	유가증권	전 체
시장위험	0	920	920
신용위험	418	682	1,100

< 2017년 주연보계정 신용 및 시장위험 위험자본한도 배분(안) >

(억원)

구 분	예치금	유가증권	전 체
시장위험	0	25	25
신용위험	22	23	45

- 다. 유동성위험은 과거 월별 지출의 통계적 분석을 토대로 향후 1년간 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5% 미만으로 통제하는 적정 단기자금 규모로 설정·관리한다.
- 라. 운영위험 혀용한도는 연간 손실가능액을 주신보기금 11억원, 주연보계정 3억원으로 각각 설정 · 관리한다.
- 마. 재무관리부는 자금운용에 따른 각종 재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부로부터 배정받은 혀용위험한도 범위 내에서 자산을 운용한다.
- 바. 업무계획 변경, 운용자산 추가 및 운용방식 변경 등에 따라 리스크관리부에서 위험한도 및 설정방식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여 위험을 관리한다.

4. 자산배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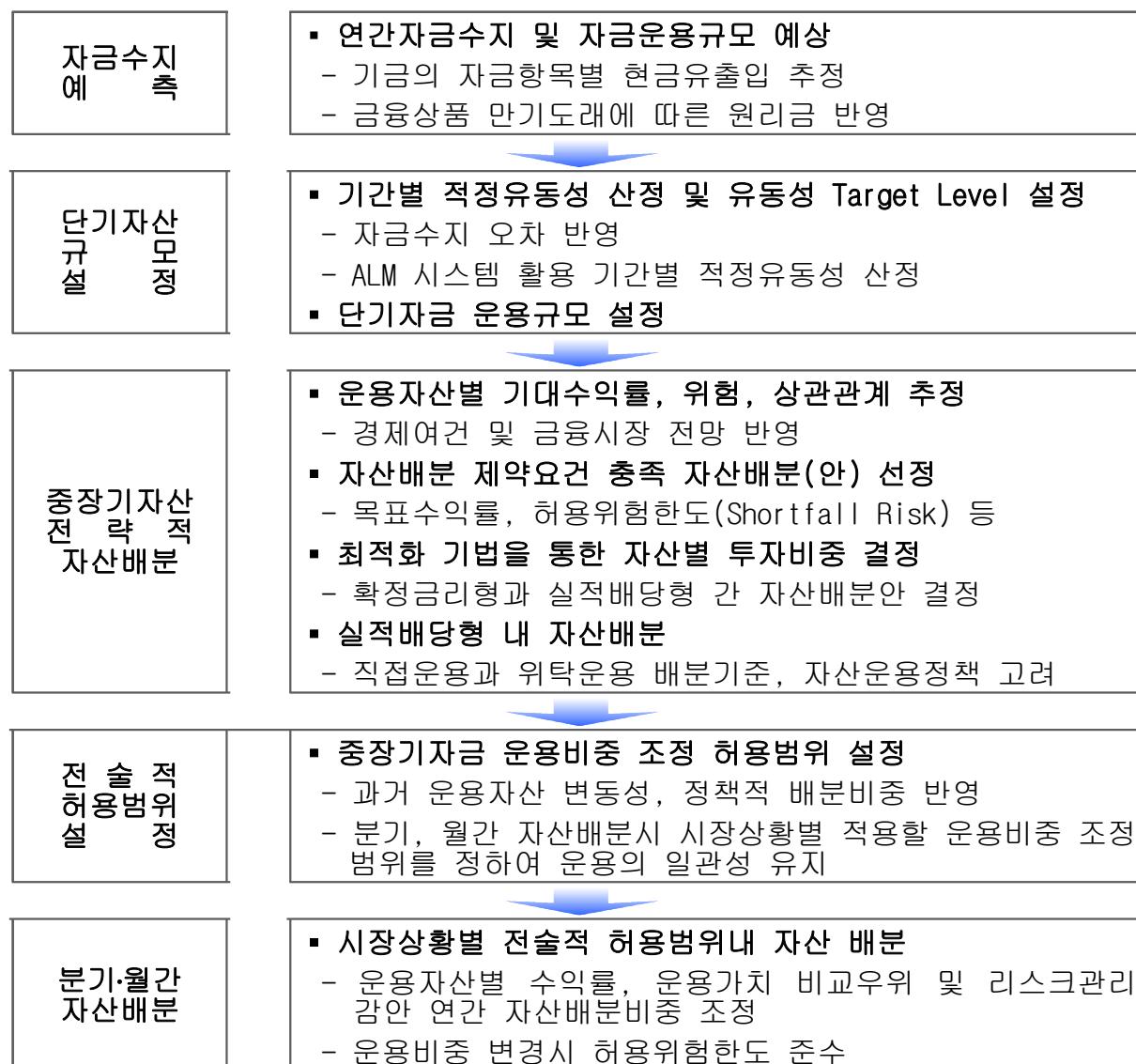
4.1. 자산배분의 원칙 및 절차

- 가. 자산배분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.

- 사업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질가치의 성장성을 유지
-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를 고려
- 운용가능한 자산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 대상을 다양화

□ 허용된 위험수준 내에서 수익률을 극대화

나. 기금의 자산배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.



4.2. 전략적 자산배분

- 가.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,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을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한다.
- 나. 전략적 자산배분은 중장기자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결과도출이 투명하고 여러 자산배분 시나리오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중심으로 평균- 분산 최적화(Mean- Variance Optimization)모형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.

다. 향후 경제전망, 보유 포트폴리오의 자산 종류별·만기별 비중, 자산별 기대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도출한 자산배분안 중에서 다음의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자산배분안을 선택한다.

<중장기자산 자산배분 제약조건>

- 자산배분안의 기대수익률이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 이상이어야 함
- 향후 1년 동안의 누적투자수익률이 '0%'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1% 이하로 통제
- 향후 3년 동안의 누적투자수익률이 '0%'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0.5% 이하로 통제
- 향후 5년 동안의 누적투자수익률이 '불가상승률'을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5% 이하로 통제
- 향후 5년 동안의 잉여수익률(적립비율×자산수익률 - 부채성장률)이 '수지차수익률'을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10% 이하로 통제

라. 2017년 자산배분안은 다음과 같다.

-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(Shortfall Risk)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확정금리형상품(예치금)과 실적배당형상품(유가증권)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결정한다.

【'17년 자산배분안】

구분	자산종류	비중(%)	허용오차범위*
주신보기금	단 기	0.1	
	중장기	99.9	
	확정금리형	40.0	±10%p
	실적배당형	59.9	±10%p
	직접운용	액티브운용 30.9	±2.9%p ±7.1%p
	위탁운용	22.5	±10%p
	합 계	100	
주연보계정	단 기	0.4	
	중장기	99.6	
	확정금리형	49.8	±10%p
	실적배당형	49.8	±10%p
	직접운용	22.9	±10%p
	위탁운용	26.9	±10%p
	합 계	100	

* 초과수익률의 Relative Shortfall Risk 제약조건을 충족하도록 설정

4.3. 전술적 자산배분

- 가. 전술적 자산배분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주어진 비중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나.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 단위로 자산별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전술적 자산배분을 수행한다.

5. 자산운용기준

5.1. 운용대상 자산군

- 가. 『공사법』 제58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, 동법 제59조의5(기금규정의 준용)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(기금의 관리 · 운용)에 의한 자산을 운용대상으로 한다.

운용대상	근거규정	
○ 금융기관 예치	법상가능	공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
○ 국·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		
○ 연기금투자풀 수익증권(채권형) 매입	금융위원회 승인사항	
○ AA-등급 이상 금융채 매입		
○ AA-등급 이상 회사채 매입		

5.2. 운용자산 선택기준

- 가. 운용자산은 안정성, 유동성,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, 자산배분의 원칙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된 전략적 자산배분안 및 허용위험도를 준수하여 운용한다.
- 나. 단기자산은 적정유동성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이 높은 상품으로 선정 하며,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한다.
- 다. 중장기자산은 자산배분안, 만기구조, 금융시장 전망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운용한다.
- 라. 자산운용이 가능한 세부상품은 다음과 같으며, 운용상품에 대한 상세 선정기준은 『자금운용 업무처리기준』에 따른다.

구 분	상품구분	상 품 명
단기자산	확정금리형	요구불예금, MMDA, CMA, 정기예금, CD등
	실적배당형	국채, 지방채, 통안채, AA-등급 이상의 금융채 및 회사채 수익증권(채권형)
중장기자산	확정금리형	정기예금, CD등
	실적배당형	국채, 지방채, 통안채, AA-등급 이상의 금융채 및 회사채 수익증권(채권형)

5.3. 만기도록전 자산의 재운용기준

- 가. 만기도록전 상품의 재운용여부에 대한 계획은 사전에 수립하여 현금성자금 운용규모가 최소화되도록 한다.
- 나. 만기도록상품의 재운용 시 적정 유동성자금을 제외한 잉여자금은 중장기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. 운용상품의 만기도록에 따른 유입자금은 신규로 발생한 여유자금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으로 설정된 전략적 자산배분안에 의거하여 운용하며, 세부적인 재운용기준은 『자금운용 업무처리기준』에 따른다.

5.4. 만기도록전 자산의 환매(매도) 및 상품교체정책

- 가. 만기도록 전 자산의 환매(매도)는 다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, 환매(매도)한 자산의 상품교체는 만기도록전 자산의 재운용 기준에 준한다.

<만기도록 전 자산의 환매기준>

- 대위변제 및 사업비지출 증가로 인한 유동성 부족
- 편중자산의 해소를 통한 위험 경감
- 발행기관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금리예측 등 시장상황을 고려한 수익성 제고 등

- 나. 만기도록전 자산의 환매 및 재운용 관련 세부사항은 『자금운용 업무처리 기준』에 따른다.

5.5. 금융기관 선정기준

- 가. 거래대상 금융기관은 기관의 규모, 재무건전성,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, 금융기관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『예치대상 금융기관 평가 및 선정기준』에서 정한다.
- 나. 금융기관 평가는 연2회(상/하반기) 실시하도록 하고, 평가 실시 전 평가 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평가의 유의성을 확보하도록 한다.
- 다. 선정된 금융기관에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거래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평가등급별로 차등화된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.

6.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

6.1.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정책

- 가. 기금의 자산운용은 내부 전문인력을 통한 직접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자금 운용의 탄력성 제고 및 운용 능력을 보완하고, 분산 운용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 효과를 얻기 위해 자금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여 운용 할 수 있다.
- 나. 자산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 양성에 주력한다.
 - 연간 연수 실시계획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, 자산운용 관련 전문자격증 (CFA 등) 취득 지원을 반영한다.
 - 지속적인 내부 연수 및 외부 전문운용기관과의 정기적 토론회 등을 통해 금융시장 동향 파악과 시장 변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한다.
- 다. 위탁운용대상은 『공사법』 제58조, 동법 제59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자산으로 외부에 위탁하여 운용할 자산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설정한다.
 - 자산운용의 규모
 - 내부 전문인력 및 자금운용시스템
 - 자산운용의 위험분산 효과

○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의 수익·비용 효과 등

< 2017년 위탁운용한도(안) >

	주신보기금	주연보계정
위탁운용한도	35%	35%

* 평잔 기준

- 라. 자산을 외부에 위탁하여 운용할 시 외부위탁운용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며, 외부 전문운용기관의 활용과 운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한다.

6.2. 위탁운용기관

가. 위탁운용 대상기관

- 연기금투자풀
-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투자일임업자

나. 위탁운용기관 선정기준

- 안전한 자산운용과 선정과정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
- 실적형상품의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수익률 보장과 같은 이면합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- 위탁운용기관 선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『자금의 위탁운용기준』에 따른다.

6.3. 위탁운용의 관리

- 가. 위탁운용 시에는 위탁운용계약서를 작성하고, 위탁운용계약서에는 운용대상, 운용방법, 기준수익률, 허용위험한도, 성과평가 등을 포함하여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자가 자의적으로 운용방식을 변경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나. 투자일임방식의 여유자금 위탁은 자산운용 의사결정만을 자금운용사에 일임하고, 자금·실물관리, 회계처리 등 사무관리는 기금이 직접 수행한다.

- 다. 위탁운용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가중평균 드레이션을 BM 대비 1.5배 이내로 제한하고, 위험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탁규모 및 허용위험한도 등을 감안하여 운용대상 및 위험한도를 별도로 부여하여 관리한다.
- 라. 매월 위탁운용기관의 운용실적을 평가하고,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저조할 경우 운용기관으로부터 그 원인 및 향후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다.
- 마. 위탁계약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경우 및 기타 금융환경의 악화로 위탁운용기관의 급격한 신용도 하락 등이 예상될 경우 위탁계약의 중도해지 등을 검토하며,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등 세부사항은 『자금의 위탁운용기준』에 따른다.
- 바. 계약후 1년 도래 시점부터 반기별로 기준수익률 초과 여부에 의해 외부 위탁사간 자금재배분을 실시하며, 세부 사항은 『자금의 위탁운용기준』에 따른다.

6.4. 연기금투자풀의 위탁운용 관리

- 가. 연기금투자풀은 투자풀운영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의해 운용사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위탁운용사 선정 및 사후 관리 시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.
- 나. 연기금투자풀의 자산배분은 연기금투자풀의 위험대비 성과분석, 내부운용 및 여타 외부기관대비 비용·효익분석을 통해 연간자금계획 수립시 결정하며, 자금운용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감안하여 운용자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.
 - 펀드별 운용성과 분석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내 펀드간 자산배분을 실시하며, 세부사항은 『자금의 위탁운용기준』을 따른다.
- 다. 성과평가는 자금운용시스템을 통하여 일일 수익률을 점검하고, 월별 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수익성, 위험성, 위험조정성과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자산배분에 반영한다.
- 라. 위험관리는 전체 유가증권 허용위험한도(Market VaR 및 Credit VaR) 산출에 포함하여 설정하고 자금운용시스템을 통하여 변동성을 통제한다.

제3장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

1. 위험관리

1.1. 위험의 종류별 정의

- 위험이란 자금운용 과정에서 목표달성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가능성을 말한다.

구 분	정 의
시장위험	금리, 주가, 환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운용상품의 시장가격 변동위험
신용위험	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운용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
유동성위험	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을 초과하는 자금유출로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하거나,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상품의 만기전해지 및 보유 자산의 불리한 매각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
운영위험	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 제도,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의 오류,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
자산-부채위험	기금자산을 이용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위험

1.2. 위험 종류별 관리 방안

가. 시장위험관리

- 운용상품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, 주가, 환율 등 시장위험요인을 상시 파악하여 관리한다.
- 시장위험의 크기는 듀레이션, VaR(Value at Risk) 등에 의하여 측정하고, 측정치가 위험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규채권 편입 제한 또는 저위험 상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.
- 시장위험의 측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「리스크관리규정」 등 위험관리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나. 신용위험관리

- 신용위험의 크기는 금융기관별 신용등급과 예상부도율, 부도시손실률 등을 적용하여 측정하여 관리하고, 자금운용 시 분산예치를 통해 상품별, 금융기관별 포지션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.
- 유가증권의 경우 최근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운용하고, 예치금의 경우 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연 2회 평가하여 등급별로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.
- 여유자금 감소, 발행기관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운용한도를 초과하거나 허용위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매입을 제한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여 운용할 수 있다.
- 신용위험의 측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「리스크관리규정」 등 위험관리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다. 유동성위험관리

- 과거 단기소요자금의 통계적 분석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유동성 규모를 산출한 후, 이를 토대로 자산의 만기구조를 설정하고 기간별로 분산하여 운용한다.
 - i) 연중 월별 현금과부족 규모
 - ii) 기간 중 만기도록 운용상품 규모
- 「위기상황 관리기준」에 의거하여 유동성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위기상황 분석(Stress Test)을 실시하고,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운용중인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매할 수 있다.
 - i)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최소화
 - ii) 중도해지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비율 변화 최소화
- 유동성위험의 측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「리스크관리규정」 등 위험관리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라. 운영위험관리

- 「내부통제제도」에 의거하여 자금업무의 직무분리(Front/Middle/Back Office), 내부 자체감사^{*}의 철저한 수행 및 자금업무담당자의 윤리서약서 등의 징구 등을 통해 운영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

* 잔액현황표 작성 및 일일감사(매영업일 마감 후), 잔액대사 및 실물감사(매월1회)

- 분기별로 자금운용에 따르는 운영리스크를 자체 점검하여 감사실에 보고 함으로써 운영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.
- 감사실은 자금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성과관리부서의 상호견제 기능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확립한다.
- 운영리스크 자가진단을 통해 선정한 자금운용 관련 핵심리스크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며, 점검 결과를 감사실에 보고한다.
- 운영위험의 측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「리스크관리규정」 등 위험관리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마. 자산-부채 위험관리

- 자산-부채 위험은 중장기적으로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을 기금 자산에 의하여 부담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.
- 보증채무이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 및 가계부채증가율 등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주기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상시 관리한다.
- 자산-부채 위험의 크기는 기초자산 대비 신용보증규모를 산정하는 운용 배수에 의하여 측정한다.
- 측정된 결과에 따라 자금운용 시 중장기자금의 만기 및 자산배분에 반영하여 자산-부채 듀레이션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한다.
- 자산-부채 위험의 측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「리스크관리규정」 등 위험관리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1.3. 위험관리 보고체계

- 가. 위험과 관련한 보고체계와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.
- 나. 위험관리결과를 리스크관리부에 보고하고 리스크관리부는 각종 한도관리 등 리스크 모니터링과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한다.
- 다. 리스크관리부장은 정기적으로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경영진에 보고한다.

1.4. 위험관리 조직

가. 리스크관리위원회

-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사 전체의 리스크관리 전략 수립 및 공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 등을 결정한다.
 - 영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
 - 리스크성향, 리스크유형별 한도의 설정
 - 리스크관리규정의 개정
-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담당임원, 유동화사업 담당임원, 기금사업 담당임원 및 이사회에서 선임한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비상임 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.
-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나. 리스크관리협의회

-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, 리스크유형별 세부한도의 설정 및 변경 등 리스크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 · 의결한다.
-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부사장, 리스크관리본부장, 유동화본부장, 서민 금융본부장, 리스크관리부장, 재무관리부장 및 사업부문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.
- 리스크관리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다. 리스크관리부

- 전사적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, 리스크한도 설정 및 관리, 재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 지표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.

1.5. 기타

가.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내용은 「리스크관리규정」, 「리스크관리규정시행세칙」, 「위기상황관리기준」 및 「내부통제제도」 등을 따른다.

2. 성과평가

2.1. 성과평가의 원칙

- 가. 성과평가는 자산배분정책 및 자산운용에 있어 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히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과 외부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한 요인도 고려한다.
- 나. 성과평가는 단순 수익률(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) 이외의 위험조정수익률 및 중장기 3개년 누적 운용수익률, 적정유동성, 금융기관 운용집중도 등을 측정하고,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운용 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.

2.2. 성과평가 조직 및 보고 체계

- 가. 성과평가는 자산운용의 계획과 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는 독립된 별도의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.
- 나. 성과평가는 연간 4회 실시하고, 재무관리부장은 그 평가 결과를 자금운용 심의회에 보고한다.
- 다. 자금운용심의회 및 자산운용조직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 및 개선의견을 바탕으로 차기 전략적 자산배분 구축 및 전술적 자산배분의 허용범위를 재조정하거나 검토한다.

2.3. 성과평가기준

- 가.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수익률은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을 현금흐름에 의해 조정한 시간가중수익률로 한다.
- 나. 기준수익률은 전략적 자산배분에 따른 각 운용자산의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자금운용에 사전적으로 운용기간 및 운용상품별로 각각 설정하여 운용한다.

□ 기준수익률의 설정

- 운용상품별로 각 상품을 대표하는 시장수익률을 기준수익률로 설정한 후,

전체자산 중 동 운용상품의 자산배분비중으로 상품별 기준수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.

[자금(상품)별 기준수익률 산정방법]

구 分		대표상품 및 기준수익률 산출방법	제공기관	
단기 자산	유동성 자금	현금성자금	MMDA 평균금리 ¹⁾ 한국은행	
		예치금	1년 미만 정기예금 수익률 ²⁾ 성과평가사 ⁶⁾	
		채 권	단기 Customized Index (KIS종합채권지수) ³⁾ KIS채권평가	
		위탁운용상품	자산구성(듀레이션과 신용등급)을 감안한 벤치마크 수익률 ⁴⁾ 연기금투자풀	
중장기자금		예치금	1년 이상 정기예금 수익률 ²⁾ 성과평가사 ⁶⁾	
		채 권	중장기 Customized Index(KIS종합채권지수) ³⁾ KIS채권평가	
		위탁운용상품	자산구성(듀레이션과 신용등급)을 감안한 벤치마크 수익률 ⁴⁾ 연기금투자풀	
합 계		$\Sigma(\text{운용자산별 기준수익률} \times \text{운용자산별 투자비중}^5)$		

주 : 1) MMDA : 성과평가 기간중 한국은행 고시금리의 평균금리 적용

2) 각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의 평균금리를 운용평잔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

3) Customized Index : KIS채권평가社에서 제공하는 종합채권지수 중 공사 및 기금이 운용 가능한 대표상품들의 시가를 시장비중으로 조합한 값을 적용

4) 연기금투자풀 국공채형은 업계 동일유형(국공채형) 평균수익률, 통합신성장동력사모증권 제1호는 KBP국공채 2~3년(40%) + KBP특수채 1~2년(35%) + KBP회사채 A-이상2~3년 (20%) + Call금리(5%)를 적용하고, 사모단독펀드는 위탁운용시 설정한 BM을 준용한다.

5) 연간자금계획의 자산배분(안) 투자비중 적용

6) 자금운용성과평가 계약기관(계약 종료등으로 계약기관 변동시 교체 가능)

다. 성과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한다.

- 정량평가는 당기 운용수익률, 중장기자금 운용수익률, 중장기자금 샤프비율, 적정유동성, 금융기관 운용집중도 등을 평가한다.
- 정성평가는 자산운용체계의 적정성, 자산운용계획의 적정성, 자산배분의 적정성, 자산운용관리의 효율성,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및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.

라.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『자금운용성과평가기준』 을 따른다.

제4장 선관주의 원칙

1. 감사 및 공시

1.1. 감사

가. 내부감사

- 자산운용과 독립된 감사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며, 동 감사와 별도로 매월 기금 및 계정의 실물 확인감사와 잔액대사를 실시한다.
- 내부통제기능 강화로서 회계팀은 기금 및 계정의 매일 자금 유·출입에 대한 감사와 매월 시재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무관리부장에게 보고한다.

나. 외부감사

- 기금 및 계정은 『공사법』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 및 계정 업무 전반 및 자금운용 관련 사항에 대해 감독기관(국회, 감사원, 금융위원회)으로부터 수시로 감사를 받는다.
- 『국가재정법』에 의거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전반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별로 외부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감사를 수감한다.

1.2. 공시

- 가. 기금의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시하여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.

- ①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 결산 관련 사항
- ② 자산운용지침, 자금운용 성과평가 결과, 운용수익률 등 자산운용 관련 사항
- ③ 기타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2.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

- 가.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인이 되기 위하여 모든 임·직원은 『한국주택

금융공사 윤리현장』과 『청렴유지 등을 위한 임·직원행동규정』을 준수하고 특히, 자산운용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.

- 직원은 관계 법령, 자금의 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, 자금운용에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, 제반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.
- 자산운용담당자는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 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·유지하여야 한다.
- 기금 및 계정 자산의 관리자로서 안정성, 공공성, 수익성이 최대화되도록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한다.
-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물질적·금전적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,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손할 수 있는 일체의 금품, 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.
-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 분석,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수수료의 할인서비스에 한한다.
- 자신의 이익과 기금 및 계정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기금 및 계정의 이익을 우선한다.
- 자산운용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기금 및 계정의 자산운용을 위해서만 사용한다.
- 자산운용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.
-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기금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,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.
- 사회통념 및 사회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자산운용은 지양한다.
- 부당하게 위탁운용기관의 자산운용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실적배당상품의 금리약정, 손실보전 이면계약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한다.

- 금리입찰, 수수료 덤팅 등 과도한 경쟁유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위 의사결정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나. 행위준칙 및 자산운용관련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하였을 경우에 손실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